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칙

- 제정 1965. 3. 20.
- 1차 개정 2001. 3. 1.
- 2차 개정 2003. 3. 1.
- 3차 개정 2005. 9. 1.
- 4차 개정 2007. 1. 8. 규칙 제 1173 호
- 5차 개정 2011. 6. 15. 규칙 제 1273 호
- 6차 개정 2012. 2. 00. 규칙 제 1297 호
- 7차 개정 2012. 7. 16. 규칙 제 1 호
- 8차 개정 2012. 10. 2. 규칙 제 4 호
- 9차 개정 2013. 4. 5. 규칙 제 5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상설 연구학교 운영 및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한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의 역할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7에 둔다.

제4조 (학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평가 및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6.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7.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8.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포상 및 징계
10.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학교 시정
12. 학칙 개정 절차
13.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1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본교의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

1.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방학, 학년말의 휴가
3. 개교기념일(4월 20일)
4. 토요일휴업일(매주 토요일)
5. 효 체험 휴업일(아버지 주간, 한가위 주간)등 재량휴업일

② 제①항 2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 학칙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학년별 3학급씩 총 18학급으로 편제하며 특수학급 1학급을 둔다.

제9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24명 이하로 한다. (단,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 정원에 한하여 시행)

② 특수학급 정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및 과정수료 · 졸업의 인정

제10조 (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 및 시간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른다.

② 본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바른생

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교육부과학교
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하되 필요시 과목을 증설할 수 있다.

- 제11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
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되 평가 시기 및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 제13조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
상으로 한다.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별도 교과별 성취목표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6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
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⑤ 학생이 질병 기타 사정으로 결석할 때에는 보호자가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사유를
밝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학생 생리 결석 월 1회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결석한 날
로부터 3일 이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수료

- 제14조 (입학)** ① 본교의 취학 연령은 교육법에서 정하는 적령아 및 전년도 의무취학 유예자로
한다.
② (입학전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본교 소정의 전형 방법에 의하
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③ (통학구역) 학생의 통학구역은 청주시, 청원군으로 한정한다.

- 제15조 (전입학)** ①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 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본교에 전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전입학 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모집 공고일 현재 정원 미달인 학년에 한하며, 특별한 경우 미모집할 수 있다.

제16조 (출석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유예 및 면제)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면제, 정원 외 처리한다.

- ② 유예 또는 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청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결정을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 (재·편입학) ①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재외국민 자녀 등의 입학, 재·편입학 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령에 맞는 학년을 지정한다.

제6장 조기진급 · 조기졸업 ·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0조 (조기진급·졸업)

- ①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 29)에 의하여 조

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가.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1조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①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교육과정 위원회의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선정 기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22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위원회의 교과목별 평

가를 실시한다.

㉔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㉕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 7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제23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 평가)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 평가 소위원회) 2012.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육과정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조기이수인정 평가 소위원회는 위원으로 교원,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 책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㉔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㉕ 업무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㉔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㉕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⑥ (이수인정의 기준)
 - ㉠ 조기진급·졸업·진학
 - 1)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 2)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⑦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위원이 ㉠,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 (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기타의 비용징수) ①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교육비 등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6조 (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7조 (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의 생활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생징계가 필요 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

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 ③ 장애학생에 대해 폭력이 가해졌을 때에는 가해학생에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처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한다.
- ④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학생징계가 필요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등

제29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체적인 학생자치활동 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1장 학교 시정

제30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정) 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수업은 9시 20분부터 시작하되 계절에 따라 시작 시각 및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31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든다.

② 개정안을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13장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제32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4조)

제14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3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4조 (교외체험학습)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적성 개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①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3.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4.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②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③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외 체험학습 승인 절차는 본교 ‘교외체험학습 계획’에 따른다.

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체험학습(가족동반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가족동반 체험학습)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음.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위탁 현지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35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본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유학의 특례) 초등학생의 자비유학은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단, 변경된 유권 해석에 따라 제15조에 의한 유학을 부친, 모친 등 부양 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하며, 부 또는 모의 공무상 외국 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 등)로 제한한다.

제38조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학생복식)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교복, 명찰 등을 착용 또는 패용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본 학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교육부 인가에 의해 청주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65년 03월 20일 청주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장

부 칙 (2001. 3. 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01년 0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3. 3.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급정원 및 전입학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이 정하는 학급정원 32명의 기준은 2004학년도부터 적용하며, 입학 및 전입학에 대한 소정의 절차는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9.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급정원 및 입학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이 정하는 학급정원 24명의 기준은 신입생 입학 정원에 한하여 시행하되 2012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적용하며 2016학년도에는 전학년 학급당 인원수를 24명으로 편성한다.

부 칙 (2012. 2.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7조 휴업일과 11조 수업일수 조항은 2012. 03.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